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304 발의연월일: 2024. 11. 6.

발 의 자: 곽상언·이기헌·이성윤

정성호 · 최민희 · 윤종군

조계원 · 김 현 · 이재관

양부남 • 허성무 • 권향엽

허종식 • 김현정 • 염태영

김병주 · 전진숙 · 어기구

복기왕 · 김종민 의원

(20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전기요금은 전기사업법에 근거하여 한국전력공사가 작성한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은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및 농사용 등 소위 전기의 '사용 용도별'로 전기소비자를 구분한 후 각용도의 전기요금을 서로 차등하는 요금제(이하 "용도별 차등요금제"라 함)를 채택하고 있고, 그중 주택용 전력의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전력사용량의 구간을 나누어구간별 요율이 증가하는 전기요금을 부과하는 누진요금제(이하 "누진요금제"라 함)를 채택하고 있음.

"용도별 차등요금제"는 전기라는 재화가 소비자에 따라 구별될 수 없는 동일(同一)한 재화임에도 불구하고 전기소비자의 사용 용도를 구 별하고 그 용도에 따라 전기요금을 차등하는 것으로, 논리필연적으로 높은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전기소비자(예컨대, 주택용 전기소비자인전체 국민)로부터 낮은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전기소비자(예컨대, 산업용 전기소비자인 전력다소비기업)에게 전기판매를 매개로 부(富)의 이전(移轉)이 발생하는 등 용도별 전기소비자 사이의 '교차보조(交叉輔助)'가 발생하는 불공정함이 존재하므로, 오래전부터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음.

또한, 모든 용도의 전기 중 오직 '주택용 전기'에만 규정되어 있는 "누진요금제"는 오직 주택용 전기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고안된 요금제로서 독점사업자가 판매하는 필수재화에는 도입된 전례가 없는데다가생활소비가 특징인 주택용 전기에는 이론적으로 도입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점, 전국민이 생활에 필요한 수준의 전기를 소비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요인이고 기후 변화 및 주택 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모든 국민이 상시적으로 또는 여름철ㆍ겨울철에 과도한 전기요금을 납부하게 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 등 때문에, 지난 십수년 동안 폐지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비등했음.

이러한 이유로,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을 징수하기 위해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공급약관」을 작성하는 경우 더 이상 "용도별 차등요금제"와 "누진요금제"를 채택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전기요금과 관련한 전기소비자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6항 신설).

법률 제 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전기판매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전기요금을 정하는 경우 용도별 차등요금제(주택용이나 산업용 등 전기의 사용 용도를 구분하여 사용 용도에 따라 서로 다른 요금단가를 적용하는 요금제도를 말한다) 나 누진요금제(전력사용량에 따라 구간을 나누어 구간별 요율을 증가시키는 요금단가를 적용하는 요금제도를 말한다)를 규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1	~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①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u> <신 설></u>				⑥ 전기판매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전기요금을 정하는 경우
				용도별차등요금제(주택용이나
				산업용 등 전기의 사용 용도를
				구분하여 사용 용도에 따라 서
				로 다른 요금단가를 적용하는
				요금제도를 말한다)나 누진요
				금제(전력사용량에 따라 구간
				을 나누어 구간별 요율을 증가
				시키는 요금단가를 적용하는
				요금제도를 말한다)를 규정하
				여서는 아니 된다.